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	의	장	
람					



제661호 2010. 10. 18. (월)

조	례							
○ 조례	제2010-5	57호 [-	울산광역시 북	구 구립도서괸	설치 및 운영	경 조례 일부가	정조례]	2
○ 조례	제2010-5	58호 [-	울산광역시 북	구 제증명 등	수수료 장수	조례 일부개정	[조례]	5
○ 조례	제2010-5	59호 [-	울신광역시 북	구수입증지조	례 일부개정조	례]		7
○ 조례	제2010-5	60호 [-	울산광역시 + 재 <del>활용촉</del> 진•	북구 음식물 <sup>;</sup> 네 관한 조례	류 폐기물 수 일부개정조	·집·운반 및 례]	<u>!</u> 	10
○ 조례	제2010-5		울산광역시 <sup>토</sup> 과태료부과 및					12
고	시							
•	제2010-7 제2010-7							14 항 고시]15
공	고							
○ 공고	제2010-6	99호 [4	신규공인등	·록 공고].				18
제:	출하여 주 급한 내용 구 전자공	남는 매주 시기 바랍니 은 사전에 남보 확인 빙	월요일 발 니다. 협의하여 '법	행되오니 <del>;</del> 주시기 바	랍니다.	의뢰는 매주		
회 람								

발행:울산광역시 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 219-7207 행정 7207)

##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🄏 ঽ 오 (인)

2010년 10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7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염포양정도서관 :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-1(염포동 348-3번 지)에 위치한다.
- 제7조제1호 중 "발전을 위한 기본방침"을 "발전"으로, 같은 조 제3호 중 "구성 방침"을 "구성"으로 한다.
- 제9조제1항 중 "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"를 "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"를 "정가로"로 한다.

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,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,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(독서진흥 및 문화강좌)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자원봉사자 운영)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23조(종전 제22조) 중 "사항"을 "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"으로 한다.

부칙

#### ♦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2010. 6. 15.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- 가.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(제2조)
- 나.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(제5조 및 제9조)
- 다.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(제18조)
- 라.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(제19조)
- 마.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「도서관법」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(제21조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🄏 🤔 (인)

2010년 10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8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7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- 8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9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
부칙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.

- 가.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.
  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(제7조제1항제5호)
  -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(제7조제1항제6호)
  - (3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(제7조제1항제7호)
  - (4)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(제7조제1항제8호)
  - (5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(제7조제1항제9호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🄏 ঽ 🙎 (인)

2010년 10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9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**제5조의3(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**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무인발급기에 따른 증지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금고 또는 수납대 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"을 "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,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계기 및 무인발급기"를 "계기,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

템"으로, "계기 및 무인발급기상"을 "계기,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"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주민과-3337호(2010.04.28)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총무과-13829호(2010.07.06) 주민등록 등·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
-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

- 가.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
  - (1)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(제5조의3 신설)
  - (2)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(제12조제2항 개정)
  - (3)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 처분 가능(제12조제3항 개정)
- 나.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
  - (1)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(제12조 제1항 신설)
  - (2)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(제12조제2항 개정)
    - ※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🄏 💆 (인)

2010년 10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60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(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다.
  - 1.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
  - 2.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경우

부칙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

- 가.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 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 조항 신설(제12조제1호)
- 나.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조항 신설(제12조제2호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🄏 💆 (인)

2010년 10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61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#### ◆ 폐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폐지이유

- 가.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,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
- 나.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('04. 1월 제정 → '08. 5월 폐지)

#### 2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폐지(2004. 6. 7제정)

# 하천점용 허가 등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10월 18일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	명	울산개발(주)						
주	소	서울 강남구 역삼동	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 502호					
점용위	치	신천동 745-1번지 신천동 745-123번지	하 천 명	동천				
점용목	ł적	하수관거 설치(D600, L=176.1m)	점용면적	구 분 지방하천	계 528.3	일시 211.3	영구 317	
점용기	l간	일 시 : 2010. 10. 11. ~ 2011. 03. 31. 영 구 : 2010. 10. 11. ~ 영구						

##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·세출결산 승인사항 고시

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규정에 의거 2010. 10. 1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 123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·세출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. 10. 18

## 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# ○ 2009회계연도 세입·세출현황

(단위 : 원)

	회 계	별	예 산 현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
	합	계	182,763,847,680	184,049,313,540	153,405,944,740	30,643,368,800
	일 반 회	계	177,823,837,680	178,923,837,480	152,693,887,910	26,229,949,570
	소	계	4,940,010,000	5,125,476,060	712,056,830	4,413,419,230
フ] =]	의료급여	기금	158,083,000	166,226,180	128,688,450	37,537,730
    특	폐기물처	리시설	3,450,345,000	3,465,479,300	0	3,465,479,300
별 회	기 반 시	· 설	343,750,000	327,496,710	0	327,496,710
의 계	주 차	장	971,132,000	1,149,523,620	567,611,380	581,912,240
	単松子地や	科學問	16,700,000	16,750,250	15,757,000	993,250

## ○ 다음년도 이월사업비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예산현액 (가)	지 출 액 (나)	다음년도 이월액(다)	집행잔액 (가-나-다)
계	30	23,583,402,610	10,730,633,110	12,758,816,250	93,953,250
명시이월	13	6,751,163,910	2,799,200,550	3,878,622,360	73,341,000
사고이월	2	210,000,000	144,252,570	45,135,180	20,612,250
계속비이월	15	16,622,238,700	7,787,179,990	8,835,058,710	0

## ○ 기금현황

(단위 : 원)

종 별 전년도말현재액		당해연도 증감	당해연도말 현재액
5종	2,595,191,037	326,729,780	2,921,920,817

## ○ 채권현황

(단위 : 원)

회	계	별	전년도말 현재액	당해연도 발생액	당해연도 소멸액	당해연도말 현재액
	계		1,501,895,010	158,201,030	68,637,270	1,591,458,770
일	반 회	계	1,171,902,880	113,614,000	0	1,285,516,880
기타	가득별:	회 계	46,876,030	4,531,980	6,562,880	44,845,130
기		글	283,116,100	40,055,050	62,074,390	261,096,760

# ○ 채무현황

(단위 : 원)

회	계	별	전년도말 현재액	당해년도 증감	조 정 액	당해년도말 현재액
	계		2,560,000,000	△807,671,330	0	1,752,328,670
일	반 회	계	2,560,000,000	△807,671,330	0	1,752,328,670
기타	투별	회계	0	0	0	0

#### ○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

(단위 : 원)

구	 분	전년도말현재액	당 해 년	당해년도말현재액	
	正	전 선도를 연세력	증 가	감 소	궁애선도일선세력
7	ᅨ	429,675,773,987	40,114,864,842	9,859,011,112	459,931,627,717
행 정	재 산	427,681,835,577	40,023,432,082	9,749,742,912	457,955,524,747
일 반	재 산	1,993,938,410	91,432,760	109,268,200	1,976,102,970

#### ○ 물품증감 및 현재액

(단위 : 원)

H		전년도말보유현황		당하	당해년도 증감		당해년도말보유현황	
_ —	분	수 량	액 금	· 향	금 액	수 량	금 액	
계		224	2,298,360,210	23	332,253,620	247	2,630,613,830	
정수물	물품	224	2,298,360,210	23	332,253,620	247	2,630,613,830	

#### ○ 예비비 지출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건 수	지출결정액	지출원인행위액	지 출 액	불용 액
계	4	38,475,000	29,598,770	29,598,770	8,876,230
일 반 회 계	4	38,475,000	29,598,770	29,598,770	8,876,230
기타특별회계	0	0	0	0	0

#### ○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

(단위 : 원)

재정상1	<b>태보고서</b>	재정운영보고서		
과 목	금 액	과 목	급 액	
자 산	464,196,858,902	수 익	127,096,160,665	
부 채	7,257,622,155	비용	117,311,835,392	
순자산	456,939,236,747	운영차액	9,784,325,273	

<sup>※</sup>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회계정보과(T.219-7242, FAX219-7249)로 문의 바랍니다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- 699호

# 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2010년 10월 18일

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



- □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: 2010년 10월 18일
- □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

공 인 명	규격(cm)	서 체	인 영
(민원사무전용)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	2.5 × 2.5	한글전서체	